

진천군 체육회·우석대학교·진천군

진천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 상생발전 업무 협약

진천군 체육회, 우석대학교, 진천군(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는 진천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기관 상호 간 호의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체육 진흥과 도약, 지역사회 통합가치 실현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진천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사항)

협약기관은 진천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에 대해 적극 협업하며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① 지역 스포츠 생태계와 연계한 체육·교육·산업·환경·인구 분야 공동 협력
- ② 대학 스포츠단의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협력
- ③ 지역 초·중·고, 우석대(체육과학대학) 및 진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스포츠 활성화 공동 협력
- ④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 공동 대응 협력
- ⑤ 협약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및 다양한 친화·교류 활동
- ⑥ 원활한 협력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진천스포츠특화도시 추진협의체(TF) 등 운영

제3조(협력 관계)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전문성(체육-교육-행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가치 창출과 스포츠 특화도시 조기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내외 공동 대응과 상생발전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협력 과정과 결과 등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약기관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은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종료 60일 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해지 의사를 통보한 1개월 이후 유효하다.

제8조(기타사항)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3부를 작성, 서명하여 협약기관별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2월 17일



진천군 체육회



울산대학교



진천군
Jincheon-Gun

회장 김 명 식

총장 박 노 준

군수 송 기 섭

김명식

박노준

송기섭